

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



사단  
법인  
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

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

수신자 : 사업장 대표이사

2020. 11. 02.

참 조 : 안전보건관리 부서장

제 목 : 2020년 마지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(법정)교육 실시안내[제조업]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 드립니다.
2. 우리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.  
[고용노동부 2016-18008호 (2016.12.26) 지정, 2017~2018년 평가 A등급기관 2019.04.03.]
3.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주는 소속근로자(관리감독자 등)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·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(법정의무사항임)
4. 교육장소는 대여기관의 사정에따라 (교육일시,교육장소)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◆ 경기 · 서울 · 인천 1일 과정 안내 ◆

※교육대상 :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(외국인, 일용직, 비정규직원 포함)

12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(제조업)										
교육일시 및 교육장소	시흥 (12/1 시흥에코센터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인 (12/22 용인포은아트홀) 평택 (12/11 평택청소년문화센터)          김포 (12/30 효원연수원) 인천남동구 (12/4, 12/14, 12/18 인천문화예술회관) 부천 (12/10, 12/16, 12/24 복사골문화센터) 고양,파주 (12/9 경기인력 개발원)          의정부 (12/28 의정부청소년수련관) 화성 (12/9, 12/28 푸르미르호텔)									
교육대상	사업장내 관리감독자 (부서장, 팀장, 과장, 직·반장, 대리, 주임 등)									
교육인원	50여명 (교육신청 및 교육비 입금순서로 대상자 확정)									
교육비	<b>6만5천원</b> (교재, 안전관련서식, 필기구제공, 중식 미제공) ※ 교육당일: 교육 실시확인서(이수증) 발급하고, 전자계산서는 교육종료 일주일 이내 회사E-Mail로 발행(신청서에 이메일 반드시 기재 요망)									
신청절차	<table border="0"> <tr> <td>제출서류 : 2종 &gt;</td> <td>②신청 (FAX전송)</td> <td>③교육비입금 [1일 65,000원]</td> </tr> <tr> <td>교육 신청서 &lt;붙임1&gt;</td> <td>FAX : 0303 - 3130 - 0390</td> <td>농협 301-2068-000-111</td> </tr> <tr> <td>○사업자등록증 사본</td> <td>신청서,사업자사본,교육비입금(접수완료)</td> <td>(사)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</td> </tr> </table>	제출서류 : 2종 >	②신청 (FAX전송)	③교육비입금 [1일 65,000원]	교육 신청서 <붙임1>	FAX : 0303 - 3130 - 0390	농협 301-2068-000-111	○사업자등록증 사본	신청서,사업자사본,교육비입금(접수완료)	(사)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
제출서류 : 2종 >	②신청 (FAX전송)	③교육비입금 [1일 65,000원]								
교육 신청서 <붙임1>	FAX : 0303 - 3130 - 0390	농협 301-2068-000-111								
○사업자등록증 사본	신청서,사업자사본,교육비입금(접수완료)	(사)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								

\* 제29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 
[ ,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 한하여 8시간 교육 이수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참조]

붙 임 : 1. 교육신청서(지역별 일정) 1부. 끝.

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

시행: (사)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대표: 박연홍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338 (이현빌딩 3층)  
문의: 02) 869-0390          접수 : FAX (0303-3130-0390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홈페이지: [www.koreasafe.or.kr](http://www.koreasafe.or.kr) ]

※ 고용노동부 등록 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,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기관, 행안부소관 비영리법인

\*상기 교육은 법제29조 ④에 의거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고용노동부에 등록된기관(강사협회등)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편리한 교육일정에 신청하여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.